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9. 5.(월) 11:00 < 9.6.(화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9. 5.(월)
담당 부서	제품안전정책국	책임자	과 장 박용민 (043-870-5450)
	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담당자	연구사 경도현 (043-870-5452)

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·추가

- “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(PM) KC 마크 확인하고 이용하세요!” -

- 국표원, 9월 6일 「전동보드 안전기준」 개정 고시 -

□ 속도 25㎞/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(PM)* 제품 **확대**에 발맞춰 **소비자 안전**을 확보하고 **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**하기 위해 **안전기준을 신설·추가**한다.

* 개인형이동장치(PM, Personal Mobility):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

○ **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**, 이하 ‘국표원’)은 저속전동이륜차(전동스쿠터),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**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(PM)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**한 **「전동보드 안전기준」**을 **9월 6일 개정 고시한다.**

□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(PM) 제품 5종*의 안전관리를 위해 **「전동보드 안전기준」을 마련**하고 **KC 인증 제도를 운용**해왔다.

* 전동킥보드, 전동외륜/이륜보드(전동휠), 전동이륜평행차(세그웨이), 전동스케이트보드

○ 또한, **전동킥보드**의 **자전거도로 이용**을 염두에 두고 **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(2019년)***하고, **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**하기 위해 **안전 요건을 개선(2020년)****하는 등 **개인형이동장치(PM)의 안전관리를 개선해 왔다.**

* (`19년) 30kg 무게 제한, 등화장치,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주행 안전요건 추가

** (`20년) 리튬배터리 별도 KC 인증 관리(과충전 시험 강화 등), 충전기 출력전압 기준 강화 등

□ 하지만, **개인형이동장치(PM)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**하면서 **다양한 신제품이 개발**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**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***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.

* PM 화재사고: (`18) 5건→(`19) 10건→(`20) 39건→(`21) 39건 [출처: 국가화재정보센터]

○ 이에 국표원은 「**전동보드 안전기준**」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(PM) 제품인 **'저속전동이륜차', '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' 등 2종*의 안전기준****을 **신설**하였다.

* ① (저속전동이륜차) 핸들 및 좌석이 부착되어 있고, 최고속도 25km/h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 기구
② (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) 기존 PM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

** (안전기준 주요내용) i) 배터리 KC 인증, 제어불능방지, 밀폐성 등 ii) 겉모양, 구조, 강도, 방수성능, 항온항습·고온·저온 시험 등 iii) 제동성능, 주행안전성 등

□ 이번에 개정하는 **「전동보드 안전기준」**은 **6개월의 유예기간**을 거쳐 **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**된다.

○ 해당 **제품 제조·수입업자**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·통관 전에 반드시 **지정된 시험·검사기관***에서 **제품시험**을 거치고 **안전확인 신고**를 한 후, 제품에 **국가통합인증마크(KC)**와 **안전 표시사항**을 기재해야 한다.

*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

○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(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)은 국표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)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**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**은 "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**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,** 제품안전에 대한 **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**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**안전기준을 추가 마련**하였다"고 밝히고,

○ "소비자 안전을 위해 **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** 반드시 **국가통합인증마크(KC)**을 **확인**해 달라"고 당부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「전동보드 안전기준」 내 신설하는 세부 품목 안전기준

□ 제5부 저속전동이륜차

세부 품목명	용어 정의
저속전동이륜차	▪ 앞뒤로 2개의 바퀴가 있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이 고정되어 있고, 원동기가 부착되어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최고속도 25km/h 미만의 이동기구 ▪ 단, 한축에 바퀴 2개가 있는 경우 바퀴 중심의 거리가 460 mm 미만인 경우 하나의 바퀴로 인정됨. 단, 좌석(또는 안장)이 탈부착되는 전동킥보드 및 페달(이륜자전거 등)이 있는 제품은 제외

제품(예)







(탈부착이 불가한 좌석 고정형 제품)



(페달이 없는 전기 자전거 형태 제품)

□ 제6부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

세부 품목	용어 정의
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	▪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되며 제품의 형태가 1~4부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, 1~4부의 형태와 유사한 제품 ※ 1~4부의 형태와 유사한 제품이란,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외륜/이륜보드에 좌석(또는 안장)이 있거나, 스케이트보드와 전동외륜보드가 융합된 형태 등을 의미함

제품(예)







□ 주요 안전요건

○ 전동킥보드 등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 준하는 안전요건으로 구성

- ① 배터리 KC 인증, 제어불능방지, 밀폐성 등 ② 겉모양, 구조, 강도, 방수성능, 항온항습・고온・저온 시험 등 ③ 제동성능, 주행안전성 등. 끝.